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091577	
등록번호	131111-0237379	
상 호	주식회사 포스	. . .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 주식회사	2014.05.23 변경 2014.05.29 등기
본 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우동, 센텀벤처타운)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507호(우동, 센텀벤처타운)	2015.01.05 변경 2015.01.14 등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3로 26, 1901호(우동, 센텀스퀘어)	2017.01.01 변경 2017.01.09 등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02, 7층(중앙동4가)	2019.09.01 변경 2019.09.16 등기
공고방법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4thparty.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 신문에 게재한다.	2015.12.21 변경 2015.12.21 등기
1주의 금액	금 5,000 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 주	. . .
	2,000,000 주	2015.11.16 변경 2015.11.20 등기
	100,000,000 주	2015.12.21 변경 2015.12.2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10,000 주	. . .
보통주식	10,000 주	. . .
발행주식의 총수	10,714 주	2015.05.29 변경 2015.06.04 등기
보통주식	10,000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714 주	. . .
발행주식의 총수	11,851 주	2015.08.13 변경 2015.08.25 등기
보통주식	11,137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714 주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3월09일 14시19분47초

등기번호	091577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13,246 주	금 66,230,000 원	2015.11.14 변경
보통주식	12,532 주		2015.11.20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714 주		
발행주식의 총수	1,192,140 주	금 5,960,700,000 원	2015.11.20 변경
보통주식	1,127,880 주		2015.11.20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64,260 주		
발행주식의 총수	1,192,140 주	금 5,960,700,000 원	2016.02.12 변경
보통주식	1,192,140 주		2016.02.15 등기
상환전환우선주	19,868 주		
발행주식의 총수	1,212,008 주	금 6,060,040,000 원	2018.01.27 변경
보통주식	1,192,140 주		2018.02.08 등기
상환전환우선주	19,868 주		
발행주식의 총수	1,460,369 주	금 7,301,845,000 원	2018.06.30 변경
보통주식	1,192,140 주		2018.07.02 등기
상환전환우선주	19,868 주		
전환우선주식	248,361 주		
발행주식의 총수	1,506,649 주	금 7,533,245,000 원	2019.07.27 변경
보통주식	1,238,420 주		2019.07.29 등기
상환전환우선주	19,868 주		
전환우선주식	248,361 주		

목 적

1. 영화 관련 영상물 제작업
1. 영상물 기술 및 장비 개발 (소프트웨어 및 기기류)
1. 광고물제작 및 광고대행
1. 무역업 (케이블티브이 프로그램 제작, 영상물 제작 등)
1. 전시 및 행사대행업 (국제회의용역 포함)
1. 건축 및 전시관련 기획 서비스
1. 문화, 기타 영화의 제작 및 수출입업
1. 위 각호에 부대되는사업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이전형 720626-*****	2012년 11월 02일 취임	2012년 11월 05일 등기
	2015년 11월 02일 중임	2015년 11월 04일 등기
	2018년 11월 02일 퇴임	2018년 11월 16일 등기
사내이사 김혜영 781210-*****	2012년 11월 02일 취임	2012년 11월 05일 등기
	2015년 11월 02일 중임	2015년 11월 04일 등기
	2018년 08월 31일 사임	2018년 09월 05일 등기
사내이사 김철 731224-*****	2012년 11월 02일 취임	2012년 11월 05일 등기
	2015년 11월 02일 중임	2015년 11월 04일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3월09일 14시19분47초

- 2/12 -

등기번호	091577
2017년 07월 31일 사임 2017년 08월 10일 등기	
대표이사 이전형 7206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62, 비동 1702호(자양동, 더샵스타 시티)	
2012년 11월 02일 취임 2012년 11월 05일 등기	
대표이사 이전형 7206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32, 102동 703호(송도동, 더샵 센트럴파크1)	
2015년 08월 17일 주소변경 2015년 11월 04일 등기	
2015년 11월 02일 중임 2015년 11월 04일 등기	
대표이사 이전형 7206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202동 1104호(송도동, 더샵 센트럴파크2)	
2017년 08월 14일 주소변경 2017년 09월 29일 등기	
2018년 11월 02일 퇴임 2018년 11월 16일 등기	
사내이사 최재천 720504-*****	
2015년 11월 02일 취임 2015년 11월 04일 등기	
2018년 11월 02일 퇴임 2018년 11월 16일 등기	
사내이사 한영우 710525-*****	
2015년 11월 02일 취임 2015년 11월 04일 등기	
2018년 11월 02일 퇴임 2018년 11월 16일 등기	
감사 김창수 740317-*****	
2015년 11월 16일 취임 2015년 11월 20일 등기	
2018년 03월 29일 퇴임 2018년 09월 05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유주동 690530-*****	
2018년 08월 31일 취임 2018년 09월 05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맹두진 700412-*****	
2018년 08월 31일 취임 2018년 09월 05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박상순 670721-*****	
2018년 08월 31일 취임 2018년 09월 05일 등기	
감사 최규담 670718-*****	
2018년 08월 31일 취임 2018년 09월 05일 등기	
사내이사 이전형 720626-*****	
2018년 11월 16일 취임 2018년 11월 16일 등기	
대표이사 이전형 7206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202동 1104호(송도동, 더샵센트럴파크2)	
2018년 11월 16일 취임 2018년 11월 16일 등기	
대표이사 이전형 7206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3길 54-10, 2층 203호(한남동, 상월대 1동)	
2019년 03월 06일 주소변경 2019년 03월 19일 등기	
대표이사 이전형 72062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2, 1701호(청담동, 피엔폴루스)	
2019년 08월 20일 주소변경 2019년 09월 02일 등기	
사내이사 최재천 720504-*****	
2018년 11월 16일 취임 2018년 11월 16일 등기	
사내이사 한영우 710525-*****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3월09일 14시19분47초

- 3/12 -

등기번호	091577		
2018년 11월 16일 취입		2018년 11월 16일 등기	
2019년 04월 29일 사입		2019년 05월 02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전환상환우선주식~~

~~일반 사항~~

- ① ~~본건 우선주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으며,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 ②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전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4%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전환권에 관한 사항~~

- ①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일 까지 (또는 존속기간 만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 ②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 2. ~~회사의 2016년 감사보고서(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 의해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 근거)상의 당기순이익에 따라 전환가격을 다음에 따라 조정한다. 단, 전환권 행사일로부터 최근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 가. ~~회계연도 2016년 매출이 100억원이상부터 150억원미만일 경우 조정후전환가격은 1,100,000원으로 한다.~~
 - 나. ~~회계연도 2016년 매출이 100억원 미만일 경우 조정후 전환가격은 950,000원으로 한다.~~
 - 3. ~~회사가 IPO시 산정된 공모가액 또는 회사가 제3자에게 매각 시 주당 매각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

~~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X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또는 회사 매각 시의 매각가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4.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5.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_i = B_i \times \{(A_c/B_c) - 1\}$$

~~N_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_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_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_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5년 05월 29일 변경 2015년 06월 04일 등기~~

~~2016년 02월 12일 말소 2016년 02월 15일 등기~~

상환전환우선주

1) 주식의 종류: 상환전환우선주식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본건 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본건 주식의 존속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3)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

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④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⑤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 449조의2,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4)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는 본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금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본건 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5)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전환기간: 본건 주식의 주주는 그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 경과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주식의 주주가 본건 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본건 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② 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건 주식의 주주는 본건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본건 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제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본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본 항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한다.

1. 본건 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 회사가 본건 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4. 본건 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본건 주식과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_i = B_i \times \{(A_c/B_c) - 1\}$$

N_i : 본건 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_i : 발행 전 본건 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_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_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5.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평가가액이 전환가격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8. 본건 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건 주식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6)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 상환청구권: 본건 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 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환조건: 본건 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

을 할 수 있다. 또한 반드시 상환요청 희망일 한달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하기로 한다.

④ 회사는 최소한도로 상환청구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 기준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범위 내에서는 투자자와 협의하여 일시 상환을 하여야 하며, 일시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투자자의 서면동의를 득하여 그 초과금에 대하여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이 완료되는 날까지 동조의 상환권에 관한 사항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7]%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⑥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한다.(회의 종료시간 12시 30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다.
 2018년 01월 26일 설정 2018년 02월 08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1. 일반사항

- (1) 본건 우선주식("본건 우선주")은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 보통주식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고, 전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 (2) 본건 우선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3)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본건 우선주가 그 이전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본건 우선주는 그 익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1)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각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2)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3)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각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 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5)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각 인수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449조의2,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6) 청산 잔여재산분배: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아래 규정된 바에 따라 청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식의 주주에 우선한다.

(i) 발행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이하 "우선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이 경우 각 인수인은 추가적으로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는 잔여재산 분배(이하 "참가분배")를 받는다.

(ii)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청산'으로 간주하여 위 (i) 호 및 (ii)호를 적용한다.

1. 발행회사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발행회사 존속에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서 그 처분이 발행회사의 영업양도나 폐지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를 매각, 임대, 양도, 기타 방법에 의해 처분한 경우(지적재산권이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여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발행회사가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되거나 단일 또는 일련의 거래에 의해 다른 회사에 의하여 인수 또는 매각되고 위 합병 또는 인수 후 발행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존속회사가 완전 자회사인 경우 존속회사의 모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전환청구기간: 본건 우선주의 전환청구기간은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3) 전환비율: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보통주식수는 1주로 한다. 다만, 전환비율은 아래 제(5)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 때,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전환가액: 본건 우선주의 최초 전환가액은 본건 우선주 1주당 인수대금으로 한다. 다만, 전환가액은 아래 제(5)항의 전환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5) 전환가액 또는 전환비율 조정:

(i)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 (Refixing): 발행회사는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매 3개월(이하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가격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둘 중에 높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본 호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ii) 발행회사의 IPO시 공모단가의 [70]% 또는 SPAC과의 합병 등 상장을 목적으로 한 타법인에 의한 인수 및 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포함함)시 주식평가액의 [70]%와 그 시점까지 조정된 전환가격(당초 발행가액 / 본 조 제5항의 각 호에 의해 조정된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수) 중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단, 본 항에서의 IPO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것 또는 인수인 1이 인정하는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코넥스시장에 상장되는 것은 제외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가격 / 회사의 IPO시 공모단가의 [70]% 또는 SPAC과의 합병 등 상장을 목적으로 한 타법인에 의한 인수 및 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포함함)시 합병비율 또는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iii) 발행회사가 본건 우선주의 발행 후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격(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을 의미함)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iv) 발행회사가 본건 우선주의 발행 후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보통주를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전부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부 행사 등을 가정하여 위 (iii)에 준하는 방법으로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v)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자본의 감소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 직전에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vi) 발행회사의 주식을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격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상응하여 조정된다.

(vii) 전환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비용으로,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게 제공한다.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의 내용, 당시 유효한 전환가격, 전환권 행사로 발행할 보통주의 수

(viii) 단주의 처리: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인하여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게 해당 단주에 당시 유효한 전환가액을 곱한 금액을 단주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6) 전환청구 절차: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전환청구서를 작성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발행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본건 우선주의 동의를 얻어 주권을 미발행한 경우 주권미발행확인서로 갈음하여 첨부할 수 있다.

(7) 전환의 효력발생: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서가 발행회사에 도달한 날)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8)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i)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효: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발행회사

등기번호	091577
------	--------

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ii) 전환청구에 따른 신주의 발행: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에 대한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a) 발행회사 주주명부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를 전환된 보통주식의 주주로 기재한 후 그 주주명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을 해당 주주에게 교부하고, (b)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전환된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해당 주주와의 협의를 거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년 06월 29일 설정 2018년 07월 02일 등기

기 타 사 항

1. 명의개서대리인
명칭 :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2015년 12월 21일 설치 2015년 12월 21일 등기
1. 전환주식의 전환
전환상환우선주식 64,260주를 보통주식 64,260주로 전환
2016년 02월 12일 변경 2016년 02월 15일 등기

주 식 매 수 선 택 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2)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1)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2)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2)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91577
------	--------

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015년 12월 21일 설정 2015년 12월 21일 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09년 08월 18일
---------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2014년 05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80-3 신한빌딩 4층으로부터 본점이전 2014년 05월 30일 등기

수수료 7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